

대전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가단20447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16. 12. 7.

판결 선고 2016. 12. 14.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5,956,363원 및 그중 25,956,349원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5. 9.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2015. 9. 11.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575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가 정한 약정 손해금율은 연 10%임),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증약정일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원금	대출일	대출은행	대출금
2013. 4. 18.	C	2015. 4. 17.	2,550만 원	2013. 4. 17.	국민은행	3,000만 원

나. 피고 A가 2015. 10. 17.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2. 26. 위 대출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26,007,689원(보증원금 25,500,000원 + 이자 507,68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51,340원을 회수하였으며, 확정손해금 14원이 발생하였다.

다. 한편, 피고 A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2015. 9. 7.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구상금 채무의 존재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25,956,363원[25,956,349원(대위변제금 26,007,689원 -회수금 51,340원) + 확정손해금 14원]과 그중 위 25,956,349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2015. 9. 7.)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2015. 10. 17.)로부터 불과 1달여 전으로 이미 피고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위와 같은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 A가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피고 A의 책임재산을 손상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민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상 그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던것으로 추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A는 원고에게 25,956,363원 및 그중 25,956,34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2. 26.부터 위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일인 2016. 3. 1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곤